365세이프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1)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 위험직종 근무자, 위험운동 참가자, 연령 등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적용됩니다.
2)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15세미만자에 대한 사망위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4) 소멸성 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가.보험금 지급사유

보장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기본계약	24시간 상해 사망 및 5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50% 이상 후유장해 시	1천만원
선택계약	질병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1천만원
선택계약	3대특정질병진단	①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②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천만원 (1회 한) 2백만원

*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부터 적용함.
* 위 주요보장이외에도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 50%이상고도후유장해 등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5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질병사망 :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3대특정질병진단급여금 :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시 질병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3. 보험료 산출 예시

산출기준 : 보험기간 1년, 직업급수 1급(사무직), 연령 35세(남),최초계약

보장구성	가입금액	보험료
24시간 상해 사망 및 50%이상 고도후유장해	1,000만원	40,060원
질병 사망	1,000만원	
3대특정질병진단	1,000만원	

4. 보험료 산출기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5.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7. 기타 알아두실 사항

Q) 가입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는지?
A) 위험직종 근무자, 위험 운동참가자 등은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자는?
A)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이며, 보험수익자가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있을 경우, 금융기관은 피보험자의 채무액 한도 내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가지며, 회사가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시 피보험자의 채무는 소멸됩니다.

Q)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A) 제한이 없으나,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발생하는 민원(예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변경

민원 : 홍길동 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직업을 변

경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것에 대해 불만 제기

해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